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4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변론 종결2023. 7. 5.

판결 선고2023. 8. 16.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17. 4. 13.자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4. 13.자 91,000,000원 및 2018. 10. 19.자 78,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4. 18.자 50,000,000원, 2020. 9. 11.자 5,000,000원 및 2021. 6. 28.자 2,5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6머546호로, 원고가 C에게 2016. 7. 20.까지 2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위 돈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6. 7. 20. C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546호로 C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아들이고, 2017. 4. 18. 서산시 E아파트 상가 F호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2. 26. 서산시 E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8. 10.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3. 9,100만 원, 2018. 10. 19. 7,8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합계 1억,6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2017. 4. 13.자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가 위 증여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 4. 13.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2.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7. 4. 13.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을 2016. 7. 26.에, 1억 원을 같은 달 29.에 배우자인 H에게 송금였고, H은 2017. 4. 18. 위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C은 2020. 9. 11. 500만 원, 2021. 6. 28. 25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는 C, H과 공모하여 원고가 입금한 돈 중 위 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5,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 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뜻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C이 H에게, H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증여로 인정할 자료가 없음은 물론, 가사 위와 같은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4. 13.자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정